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MANUAL

2025. 10. 27.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문

KT 임직원 여러분,

AI시대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KT는 고객과 사회에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AICT Company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며, KT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CP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위한 제도를 넘어, 모든 경영 활동의 나침반이자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사와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CEO로서 저는, 공정거래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KT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둘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CP 교육, 위험성 평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유관부서에 주저 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큰 위험을 예방하고, 우리의 준법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식적인 준수를 넘어, 업무 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모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받는 KT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EO 김 영 섭

발간사

안녕하세요. KT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 CP,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허태원입니다.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KT는 현재 이사회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 CP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공정거래 CP의 효과적 운영 및 공정거래 준법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의지를 표명합니다.

첫째, 최고경영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허 태 원

Chapter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1. 의의	20
2. 공정거래 CP의 필요성	21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중요성	21
(2) 공정거래 CP 효용	22
3.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	22
(1) 신고 채널 운영 목적	22
(2) 신고 대상 및 예시	22
(3) 신고 방법	23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3
5. CP등급평가 및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24
(1) CP등급평가	24
(2)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25

Chapter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28
(1) 개요	28
(2) 세부 유형	28
1) 가격남용행위	28
2) 출고조절행위	29
3) 사업활동 방해행위	30
4) 진입제한행위	31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31
(3) 위반 시 제재	32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33
(1) 개요	33
(2) 세부 유형	33
1) 거래거절	33
2) 차별적 취급	34
3) 경쟁사업자 배제	37
4) 부당한 고객유인	38
5) 거래강제	39
6) 거래상지위 남용	40
7) 구속조건부거래	42
8) 사업활동방해	43
9) 부당한 지원행위	44
(3) 위반 시 제재	46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47
(1) 개요	47
(2) 성립 요건	48
1) 둘 이상의 사업자	48
2) 합의	48
3) 경쟁제한성	48
(3) 세부 유형	49
1) 가격담합	49

2) 거래조건담합	51
3) 거래제한담합	51
4) 시장분할담합	52
5) 설비제한담합	52
6) 종류·규격제한담합	52
7) 조인트벤처담합	53
8) 입찰·경매담합	53
9) 사업활동제한담합	55
10) 정보교환담합	55
(4)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55
(5) 행동지침	56
(6) 위반 시 제재	56
(7)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57
4. Q&A	59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1. 개요	66
(1) 입법목적 및 취지	66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66
1) 하도급거래의 의의	66
2) 하도급거래 당사자	6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68
2. 계약 체결단계 준수사항	69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69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71
(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75
3.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준수사항	77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77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내용	77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80
(4) 부당 반품의 금지	81
(5) 대금감액의 금지	82
(6)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84
(7)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금지	85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8
(9)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9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90

4.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준수사항	92
(1) 선급금의 지급 의무	92
(2)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93
(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94
(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96
5. 기타 준수사항	97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97
(2) 보복조치의 금지	97
(3) 탈법행위의 금지	98
6. 위반시 제재	98
7. Q&A	99
8.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00

Chapter IV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4
1. 개요	104	
(1) 입법목적 및 취지	104	
(2) 정의 및 적용범위	104	
2.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105	
(1) 계약서 작성의무	105	
(2) 구입강제 금지	106	
(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107	
(4) 판매목표 강제 금지	108	
(5)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109	

Chapter

V

(6) 경영간섭 금지	111
(7)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112
(8) 보복조치 금지	113
3. 위반 시 제재	114
4. Q&A	114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8
1. 개요	118
(1) 입법목적	118
(2) 표시, 광고의 정의	118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119
(1)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119
(2) 세부 유형	120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120
2) 기만적인 표시·광고	121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123
4) 비방적인 표시·광고	125
(3) 추천·보증 형식의 표시·광고에 대한 부당성 판단	126
3. 중요정보의 공개제도	128
4. 위반 시 제재	129
5. Q&A	129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3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4

1. 개요	134
(1) 입법목적	134
(2) 용어의 정의	134
(3)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	134
2.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135
(1)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135
(2) 사업자 정보 표시의무	136
(3)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136
(4)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138
3. 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138
(1) 부당한 소비자 유인 금지	138
(2)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 방해 금지	140
(3) 기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141
(4)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다크패턴 금지	142
1) 입법 취지 및 내용	142
2) 숨은 갱신	143
3) 순차공개 가격책정	143
4)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144
5) 잘못된 계층구조	145
6) 취소, 탈퇴 등의 방해	145

7) 반복간섭	146
4. 위반 시 제재	147
5. Q&A	148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49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주요 개정 내역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kt**

Chapter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 태| CP등급평가 및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24**

Chapter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심결례| B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거래(구속조건부거래)행위(시정명령)(의결 제2025-075호) **43**

|심결례| C사 등의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계약 등을 활용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시정명령, 과징금 지원주체 26억 3,900만원, 지원객체 39억 200만원)(의결 제2025-164호) **46**

|기 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55**

Chapter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결례| H사, SD사, SM사의 하도급대금 연동 서면 미기재 행위(각 과태료 500만원)(공정위 보도자료 2025. 9. 22. 참조) **71**

|심결례| S사의 불합격판정 이의제기 권리 제한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경고)(의결 제2025-122호) **73**

|심결례| Y사의 기성금 일부 지급을 유예하는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80호) **74**

|법령 등 기준개정| 부당특약 고시 개정 사항(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개정 및 시행) **74**

|심결례| Y사의 발주처 발주량 감소를 이유로 물량 일부 위탁을 취소하는 등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54호) **80**

|심결례| (주)케이티디에스의 검사결과 지연 통지 등 검사결과 통보의무 위반 행위(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73호) **81**

|심결례| H사의 현금 지급 명목으로 납품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부당한 감액 행위(시정명령, 지급명령)(의결 제2025-089호) **84**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주요 개정 내역

[심결례] H사의 기술자료 제3자 부당 제공, 기술
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위반 행위(시정명령, 과
징금 4억 7,400만원)(공정위 보도자료
2025. 7. 23. 참조) **8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결례] S사의 대리점 인사 간섭, 영업활동 자유
제한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시정명령)
(의결(약) 제2025-063호) **1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기준개정] 최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5. 6. 19.)
1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심결례] M사의 청약철회 제한 및 거짓된 청약철회
기간 고지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시정
명령, 과태료 250만원)(의결 제2025-
054호) **141**
[법령 등 기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5. 8.
29) 및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개정(25.7)
142-146

편람 항목별 관련 부서(참고용)



목차	주요내용	관련부서
Chapter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CP)	• 공정거래 CP의 의의 • 공정거래 CP의 효용 •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	- 전 부서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전 부서
Chapter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 Customer부문 전 부서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Customer부문 전 부서 - 미디어부문 전 부서 - Enterprise부문 전 부서 -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
Chapter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계약 체결단계 준수사항(서면 발급 의무, 부당특약 금지 등) • 계약 이행단계 준수사항(부당위탁 취소 금지, 검사결과 통보의무 등) •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준수사항	- 전 부서 (단, 하도급법 중 협력사 기술탈취는 전 광역본부 법인고객본부 내 컨설팅담당, 미디어부문 플랫폼기술본부, Enterprise부문, 전략사업컨설팅부문, 기술혁신부문이 해당)

목차	주요내용	관련부서
Chapter IV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 대리점법의 적용범위 • 구입강제금지 • 판매목표 강제금지 •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 전 광역본부 내 고객본부(B2C) - 전 광역본부 내 법인고객본부(B2B) - Enterprise부문 서비스Product본부
Chapter V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표시광고 정의 • 거짓, 과장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 전 광역본부 내 고객본부 - Customer부문 영업채널본부 - Customer부문 서비스Product본부 - Enterprise부문 전략기획담당 - Enterprise부문 서비스Product본부 - 경영지원부문 Brand전략실 - 경영지원부문 ESG경영추진실
Chapter V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적용범위 •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등) • 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청약철회 금지, 다크패턴 금지 등)	- Customer부문 영업채널본부

※ 관련 부서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표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위 분류에 국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



Chapter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 의의
2. 공정거래 CP의 필요성
3.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hapter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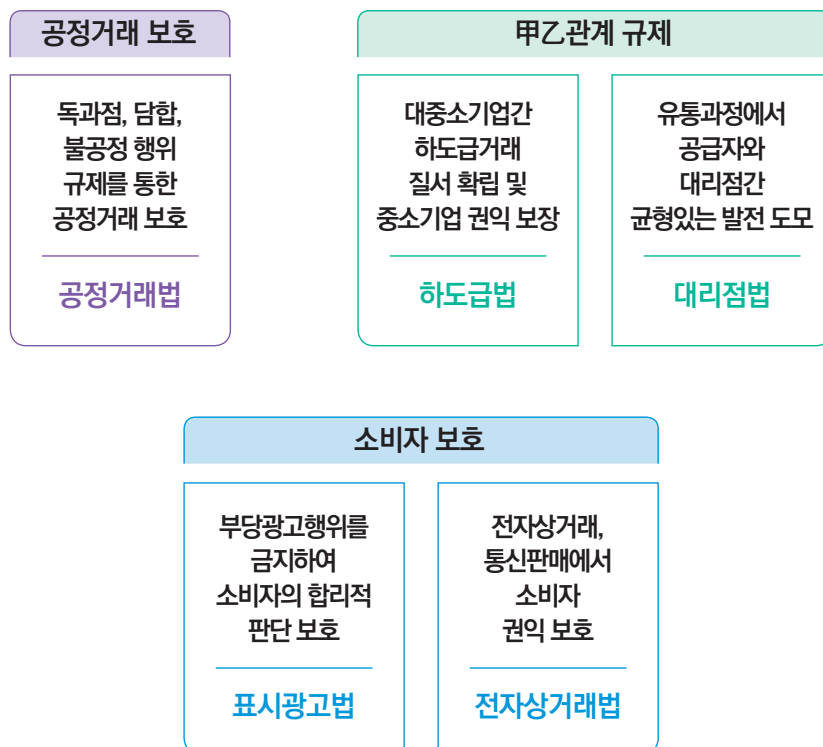
1.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 CP'라 함)의 의미

- 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함.

공정거래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공정거래 CP 주요 요소

구분	내용
1.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 공정거래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에 작성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 CP기준과 절차 포함
5. 자율준수교육 실시	•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 및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 높은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 조치를 규정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공정거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 공정거래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선조치

2. 공정거래 CP의 필요성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음.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태료 및 벌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 및 관련 임직원들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는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 모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 CP 효용

법적 리스크 예방 및 기업 신뢰도 향상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그에 따른 제재로 인한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제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

임직원 보호

-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를 제공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고, 법적 리스크를 줄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자율준수편람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법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기업은 신뢰도와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영 안정성 확보

-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여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법규 준수는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자율준수 제도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경영진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

(1) 신고 채널 운영 목적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 채널 운영

(2) 신고 대상 및 예시

KT 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입찰에서 경쟁 사업자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수의계약 진행
 - 경쟁 사업자와 이동통신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사전에 합의
- 대리점법 위반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재고품 구입 강요
 - 판매수수료 등 사전 미합의 조건을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
- 하도급법 위반
 -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
 - 발주자 대금 수령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자로부터 목적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
- 표시광고법 위반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기만 광고

(3) 신고 방법

-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며 익명성 보장(IP추적이 불가하며, 본인 동의 없이 신분 노출 없음)
- 하단 표의 모바일 혹은 PC로 자유롭게 제보 가능 (무기명, 실명 제보가능)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요구 사항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며,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
-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관련 법규 등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 사례, 판례, 행동 지침, 질의응답,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 등 포함.
- 최근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검토하여 반영.
- 임직원들은 회사 내·외부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활용

-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자율점검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할 수 있음.
 - “편람 항목별 관련 부서(참고용)”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편람 항목을 확인.
 - 업무 진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자율점검을 위해 활용함.
 -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의 의미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 참고서로 활용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소속 부서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인식제고 자료 작성시 참고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할 수 있음.

5. CP등급 평가 및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1) CP등급평가

- ◎ 등급평가 신청 기업에 대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등급평가 시행
-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 진행

구분	평가점수	정의
AAA	90이상~10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80이상~9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70이상~80미만	CP구축 및 운영, CP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 ◎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평가심의위원회 등급결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개 조치만을 적용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치 건별로 5점 감점. 단,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포함)를 이유로 감점하지 않음.
- ◎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 가능.
- ◎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무효로 함.

(2)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 ◎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명령 감경(등급 유효기간 내 각 1회)

등급	감경	감경 제외
AAA	- 과징금 15% + 5%(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 시정명령 공표 - 간행물 공표: 공표크기 및 매체 수 2단계 하향조정 -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 공표기간 단축	-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AA	- 과징금 10% + 5%(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 시정명령 공표 - 간행물 공표: 공표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조정 -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 공표기간 단축	

- ◎ 직권조사 면제

등급	감경	감경 제외
AAA	2년	-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AA	1년 6개월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Chapter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4. Q&A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Chapter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1) 개요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함[공정거래법(이하 'II 항목'내에서 법조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나(법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관련 지리적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시장확정 필요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 ☉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①가격남용, ②출고조절, ③사업활동 방해, ④진입제한, ⑤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2) 세부 유형

1) 가격남용행위

☞ 내용

- ☉ 가격남용행위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5조 제1항 제1호).
-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관비, 영업외비용 등을 말함.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비스킷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H 제과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 제품가격을 원가상승요인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더 많이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판단**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각 제품의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더 인상되었다는 점 및 각 제품별 변동전 용량의 제품 판매기간중의 도매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비스킷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의결 제1992-001호)

☞ 행동지침

- ☉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비용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며, 가격 책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출고조절행위

☞ 내용

- ☉ 출고조절행위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5조 제1항 제2호).
-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고조절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
-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는 경우를 말함.

☞ 판례

☞ **사실관계** 국내 대두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S사가 대두유 제품의 출고를 조절하면서 출고조절 직전 일일평균판매량 대비 38.3%, 출고조절 직후 일일평균판매량 대비 16%에 불과한 수량만을 출고한 사례

☞ **판단** S사의 행위는 대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고량을 감소시킨 부당한 출고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억 1,500만원 부과정당)(서울고등법원 1990. 10. 6. 선고 99누3524 판결)

☞ 행동지침

- ☉ 재고가 충분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 ☉ 공급이 부족함에도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다.

3) 사업활동 방해행위

☞ 내용

-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3호)로, 아래와 같은 세부 유형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 포함)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H협회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용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일부만 지급한 한국방송공사(KBS) 및 문화방송(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한 사례

☞ 판단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억 7,500만원, 고발)(의결 제2023-146호, 결정2023-017)

☞ 판례

☞ 사실관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사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의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사례

☞ 판단 N사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있는데, 비교쇼핑서비스는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N사의 행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66억 부과 정당)(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 행동지침

-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지 않는다.

4) 진입제한행위

☞ 내용

- ☉ 진입제한행위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로, 아래와 같은 세부 유형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려는 협력업체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상품, 용역을 감축하는 등 신규진입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내용

-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란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 ☉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정보 제공자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자신에게 제공한 확인매물정보를 경쟁 플랫폼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판단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이른바 ‘멀티호밍’을 차단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10억 3,200만원)(의결 제2021-019호)

판례

〈kt사례〉 기업메시징 서비스

-  **사실관계** (주)케이티에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원재료 구입비용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
-  **공정위 판단**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이외에 인건비, 장비비용, 판매관리비 등 일정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바, 전송서비스 이용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신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0억원)(의결 제2015-050호)
-  **법원 판단** 기업메시징사업자는 적어도 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이상의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이보다 낮은 대가로 판매하였는바,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적절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져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등 케이티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정당)(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누49330 판결)

행동지침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나 유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3) 위반 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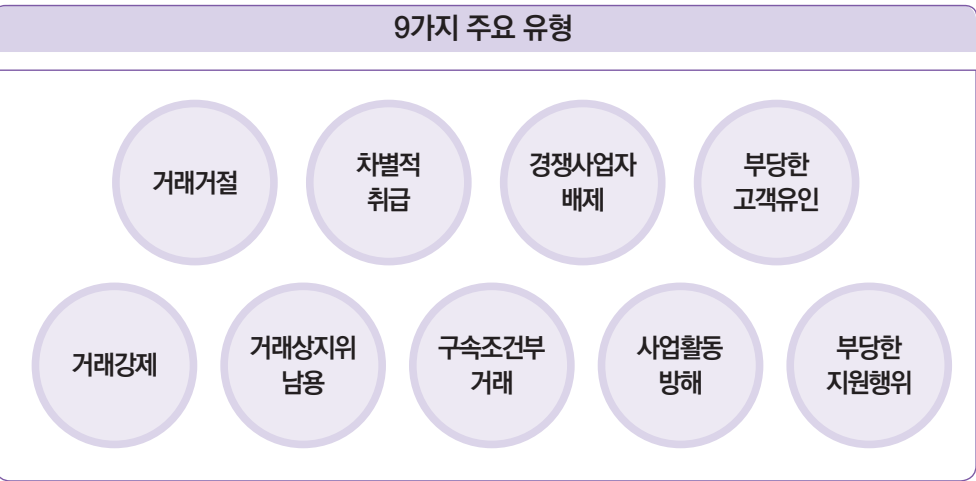
시정조치	• 가격인하,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7조) •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1호)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6% 범위 과징금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8조)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 제109조) •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법 제115조)

2.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1) 개요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법 제45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경쟁제한성”)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불공정성”)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방해, ⑨부당한 지원행위의 9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바, 사업자가 해당 행위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가 성립함.

(2) 세부 유형



1) 거래거절

내용

- 거래거절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①공동의 거래거절과 ②그 밖의 거래거절로 구분됨[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II 항목’ 내에서 ‘시행령’이라 함) 별표2].
- ①**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특정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본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의 거래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음

- 1)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2) 특정 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3)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등
- ㉔ ②그 밖의 거래거절이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그 밖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 2)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3)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 4)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 5)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등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 8개 레미콘 사업자들이 A시공사가 레미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 발주자인 B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사례

🔍 판단 8개 레미콘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95%이고 60분 내에 타설되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점, 거래거절 대상인 공사 발주자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다가 레미콘 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시정명령)(의결 제2013-152호)

🔍 사실관계 T사가 자기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의 고주파간암치료기를 판매한다는 이유 또는 자기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중단한 사례

🔍 판단 T사의 거래거절로 인해 상대방이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에서의 대체 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총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 상대방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 공급받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거래거절에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의결 제2008-186호)

행동지침

- ㉔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 ㉔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품질 불량, 납기 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하며,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별적 취급

내용

- ㉔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①가격차별, ②거래조건차별, ③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④집단적 차별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㉔ ①**가격차별**이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가격차별 행위로 인해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및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함.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음.
- ㉔ ②**거래조건차별**이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며,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 위법성 및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함.
- ㉔ ③**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되며, 소비자에 대한 차별도 포함됨.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㉔ ④**집단적 차별**이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의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며,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되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C사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함에 있어 계열회사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비계열회사인 케이블TV 영화방송채널 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은 사례

🔍 판단 C사가 케이블TV 방영권을 계열사에게만 독점 공급한 행위는 계열사를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케이블TV 영화방송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 또는 유지시킬 우려가 있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의결(약) 제 2008-380호)

판례(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사실관계 G사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비가맹점을 차별한 사례

🔍 공정위 판단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비가맹점이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맹점에 비해 심각한 경쟁 열위 상태에 처하게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의결 제2018-341호)

🔍 서울고등법원 판단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정사업자'의 범위는 차별이 문제되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통해 확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기준으로써 확정돼야 함

본 사안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품을 가맹점에 의한 유통망에만 공급하는 가맹사업방식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제품의 이용 가격이 높아 비가맹점이 신제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가맹점과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76721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행동지침

-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 그룹사와 비그룹사의 제품간 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룹사의 제품을 비그룹사의 견적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지 않는다.
- ◎ 그룹사가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그룹사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3) 경쟁사업자 배제

내용

- ◎ 경쟁사업자 배제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①부당염매, ②부당고가매입으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 ①**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염매의 상대방은 소비자도 포함되며,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 판단함.
 - (위반이 아닌 경우)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는 경우, 하자상품, 유통기한 임박 물건, 계절상품, 재고 등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는 경우,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염매를 하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 ②**부당고가매입**이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고가매입을 통해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 판단함.
 - (위반이 아닌 경우)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가매입하는 경우,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H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약 2개월간 콜라를 구입원가인 984.5원보다 낮은 390원~890원으로 판매한 사례

🔍 판단 H사가 콜라를 미끼 상품으로 내세워 장기간 동안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통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의결(약) 제2001-031호)

4) 부당한 고객유인

📖 내용

- ㉔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4호), ①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②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㉔ ①**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 가격할인, 판촉물 지급,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 면제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함.
 -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수수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㉔ ②**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 기만 또는 위계로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허위의 비교자료를 작성하는 행위,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㉔ ③**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간 거래성립 또는 거래계속을 방해하였는지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함.
 -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 효과가 있더라도 범위만으로 보지 않음.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C사가 직매입상품과 자체 기획 상품(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정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여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를 늘리고 평균 별점을 높인 사례

🔍 **판단** C사의 이러한 행위는 쇼핑몰 운영자이자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과징금 1,628억원, 고발)(의결 제2024-284호, 결정 제2024-012호)

📖 판례

〈kt사례〉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 **사실관계** (주)케이티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제조 3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반영하여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이 책정한 사례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가 내지 출고가를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대가로 고가의 단말기를 실질적 할인혜택이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53억 6,300만원)(의결 제2012-122호)

🔍 **대법원 판단** 본 사안에서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이나 단말기 가격과는 아무런 재무적 관련성이 없는 사전 장려금을 단말기 가격 자체에 반영한 후 이를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유통망을 통하여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그와 같은 할인이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할인의 재원이 단말기 출고가 자체에 이미 포함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되는 수익 중 일부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 행동지침

- ㉔ 경쟁사업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고객 또는 브로커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사실과 달리 당사의 상품이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지 않는다.
- 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허위사실 광고, 과장된 광고, 경쟁사와 부당한 비교 및 비방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

5) 거래강제

📖 내용

- ㉔ 거래강제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①끼워팔기, ②사원판매, ③그 밖의 거래강제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㉔ ①**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지,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함.
 - 주된 상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팔거나(예: 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두 상품을 따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㉔ ②**사원판매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 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판매영업 담당(판매영업직)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미달분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 또는 정규직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㉔ ③**그 밖의 거래강제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공급량 또는 매입량 축소, 거래 중단 또는 미개시, 장려금 축소 등)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상대방이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함.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을 운영하는 H사가 자사의 객실 이용권에 조식쿠폰 비용을 포함하여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는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고 조식을 미이용 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은 사례

🔍 판단 콘도의 경우 객실에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객실이용권과 조식권을 별개로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H사가 고객이 조식권을 원치 않더라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고객의 조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시정명령, 과징금 4,800만원)(의결 제2013-029호)

행동지침

- ㉔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에는 끼워팔기 등 해당 여부를 미리 법무검토 후 진행한다.

6 거래상지위 남용

내용

- ㉔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①구입강제, ②이익제공강요, ③판매목표강제, ④불이익제공, ⑤경영간섭으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㉔ **거래상 지위** 여부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
- ㉔ ①**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 ㉔ ②**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구입물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 ㉔ ③**판매목표강제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법성 판단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됨.
 - 판매장려금, 인센티브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 등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됨.
- ㉔ ④**불이익제공**이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지체 발생하였음에도 지연이자 미지급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㉔ ⑤**경영간섭**이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바,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케이티텔레캅(주)에서 협력업체가 납품, 설치한 카드리더 부품(RF모듈)을 무상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협력업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여 협력업체가 RF모듈을 무상 교체한 사례

🔍 판단 본건 협력업체는 케이티텔레캅(주)(이하 '피심인')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고 협력업체 전체 매출 중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약 70%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됨
또한, 하자가 발생한 카드리더 부품(RF모듈)은 피심인이 관계사인 KT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하여 제작된 것이고 피심인이 협력업체에게 해당 RF모듈을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하자의 책임은 피심인에게도 상당히 있음에도 피심인은 그 책임을 전부 협력업체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의결 제2014-128호)

🔍 사실관계 L사 총청영업단에서 관할 지역 대리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례

🔍 판단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L사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게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행위는 대리점에 과도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써 부당한 판매목표강제 행위라고 판단함(시정명령)(의결 제2021-138호)

📌 행동지침

-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강제로 공급하거나,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 대리점에 목표설정을 넘어 목표 미달 시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 ☉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계약 또는 거래조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7) 구속조건부거래

📌 내용

- ☉ 구속조건부거래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①배타조건부거래, ②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 ①**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 노력 없이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 ②**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함.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D사가 자신의 대리점이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업 활동을 개시하였거나 유지보수 계약 진행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독점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에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

🔍 판단 D사의 행위는 대리점간 가격 경쟁 및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기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대리점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고 판단함(시정명령, 과징금 7억 3,800만원)(의결 제2024-233호)

🔍 사실관계 B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L사의 음식 배달 대행 프로그램(생*대로)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L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대여(렌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사례

🔍 판단 음식 배달 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하여 음식 배달 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시정명령)(의결 제2025-075호)

📌 행동지침

- ☉ 거래 상대방에게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 시 당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지 않는다.

8) 사업활동방해

📌 내용

- ☉ 사업활동방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법 제45조 제1항 제8호), ①기술의 부당이용, ②인력의 부당유인·채용, ③거래처 이전 방해, ④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로 구분됨(시행령 [별표2]).
- ☉ ①**기술의 부당이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 ☉ ②**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 ③**거래처 이전 방해**란,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됨.
- ◎ ④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란, 위의 사업활동방해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M사가 식자재 공급 업체를 압박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을 중단시키고 경쟁사업자를 허위로 형사고소하고 경쟁사업자의 매장 근처에 보복 출점한 사례

☞ **판단** M사의 식자재 공급 방해, 허위 고소, 보복 출점 행위 등은 신생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함(시정명령, 과징금 4억원)(의결 제2023-126호)

☞ 행동지침

-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입수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로 남겨둔다.
- ◎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 상당수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9) 부당한 지원행위

☞ 내용

- ◎ 부당한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회사 등에게 부당하게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 세부 유형으로 ①부당한 자금지원, ②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③부당한 인력지원, ④부당한 거래단계 추가가 있음(시행령 [별표2]).
- ◎ 지원을 받는 객체는 개인도 될 수 있고, 반드시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도 않으며,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도 지원객체에 포함될 수 있음.
- ◎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포함)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함.
- ◎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함.

☞ 지원행위의 세부 유형 및 사례

- ◎ ①부당한 자금지원이란, 다른 회사 등에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 ◎ ②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이란, 다른 회사 등에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됨.
- ◎ ③부당한 인력지원이란, 다른 회사 등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등이 해당됨.
- ◎ ④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해당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함.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이 해당됨.

☞ 위법성 판단 기준

-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지원행위에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 거래분야에 있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함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무선통신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S사가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함께 유료방송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SB사의 IPTV 상품을 대리점을 통해 결합 판매하면서, IPTV 판매수수료를 자회사 대신 부담한 사례

👤 판단 S사의 판매수수료 지원행위를 통해 자회사의 디지털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되고 재무실적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S사의 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거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 S사 과징금 32억원, SB사 과징금 32억원)(의결 제2021-075호)

🔍 사실관계 M사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관련회사를 끼워 넣은 후 실제 납품회사로부터 관련회사에게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관련회사에게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한 사례

👤 판단 M사는 납품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함에도 관련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관련회사는 아무 역할 수행 없이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확보하여 사업 위험이 제거된 바,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 M사 과징금 5억 2,800만원, 관련회사 과징금 2억 5,100만원)(의결 제2023-144호)

🔍 사실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사 및 CG사가 2015년경 각각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계약을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E사 및 CS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예: 주식,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

👤 판단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로 그룹 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지원주체 26억 3,900만원, 지원객체 39억 200만원)(의결 제2025-164호)

행동지침

- ◎ 다른 회사(그룹사 포함)에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 다른 회사(그룹사 포함)와 거래 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한다.
- ◎ 다른 회사(그룹사 포함)에게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거나,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키지 않는다.

(3) 위반 시 제재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8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

위 남용, ⑦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방해

시정조치	•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1호)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4% 범위 과징금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50조)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4호) • 단,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 제109조) •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에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법 제115조)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시정조치	•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1호)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 범위 과징금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50조)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1) 개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 ◎ 부당한 공동행위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공급량, 낙찰자 등을 사업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법 제40조 제1항)하며, 담합 혹은 카르텔(Cartel)이라고 불림.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①가격담합, ②거래조건담합, ③거래제한담합, ④시장분할담합, ⑤설비제한담합, ⑥종류·규격제한담합, ⑦조인트벤처담합, ⑧입찰·경매담합, ⑨사업활동제한담합, ⑩정보교환담합 등이 있음.

(2) 성립 요건

- 부당한 공동행위는 ①둘 이상의 사업자가 ②특정 행위(3.3. 세부 유형 참조)를 공동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③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함.

1) 둘 이상의 사업자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하여야 함.
-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100% 모자 회사 관계 등), 이들 사이의 합의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미적용함.

2) 합의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됨.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내심으로는 합의에 따른 생각 없이 합의를 한 경우 또는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함.
 -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외관이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법 제40조 제5항).
 -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예: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
 -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주고받은 때(예: 가격인상계획에 관한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해당 계획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 *민감한 정보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등), 단순 경영목표치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경쟁제한성

-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쟁사업자간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거래지역 제한·고객의 할당, 입찰가 또는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등)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 사업자간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함.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분석함.

(3) 세부 유형

1) 가격담합

☞ 내용

- 가격담합이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이란 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함.
-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또는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시내전화

☞ **사실관계** 케이티, H사는 2003.6월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양사간 요금격차 축소 목적으로, 2003.6.23 케이티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H사는 요금을 인상·조정해 주면 케이티가 H사에게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가입자 수준 기준) 1.2%씩 2007년까지 이관해 주기로 합의

☞ **판단**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에 대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으며, 2002년 11월경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본건 담합과 무관하고, 시내전화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949억 6,000만원, S사(과거 H사) 18억 900만원)[의결 제2005-130호, 의결 제2009-171호(과징금 재산정)]

※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5누2023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kt사례〉 국제전화

☞ **사실관계** 케이티, D사, O사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저가요금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 5월말경 국제전화 할인상품 중 주요 3개국(미국, 일본, 중국) 요금을 인하하면서 그 인하 수준을 합의

2003. 2. 19.에는 국제자동통화 국가별(대역별) 표준요금 인하수준, 할인율 및 할인시간대 축소, 착신번호할인 단계적 폐지, 다량이용할인 축소, 할인요금상품 가입비 인하 등에 합의하고, 그 후 O사의 국제자동통화 표준요금 중 미국통화 요금은 O사의 요구대로 당초 합의수준 보다 더 인하하는 수준(분당 276원)으로 하기로 합의

☞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49억 7,400만원, D사 7억 5,000만원, O사 1억 4,800만원)(의결 제2005-275호)

〈kt사례〉 시외전화

 **사실관계** 케이티, D사, O사는 2002. 8. 19. 동일한 내용의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및 가입자 유치경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후 2002년 9월경 실무진들의 세부 협의를 거쳐 피심인 케이티의 맞춤형정액요금상품과 동일한 내용으로 된 정액요금상품을 순차 출시하기로 합의
H사가 2004. 6월말부터 시외전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H사의 저가 요금전략에 의한 경쟁사간 요금경쟁 촉발을 막기 위하여, 케이티, D사, O사, H사는 2004. 6. 24. H사는 최저요금제 적용 주장을 철회하고, 기존 3사 중 가장 저가였던 O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기존 3사는 당시의 요금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192억 8,400만원, D사 9억 4,200만원, O사 1억 1,800만원, H사 6,000만원)(의결 제2005-331호)

〈kt사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

 **사실관계** (주)케이티, S사, L사 3사는 2013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체를 결성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국소’로 약칭함)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
기존 임차 국소에 포지(4G), 파이버지(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

 **판단** 통신 품질 경쟁에 따른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적 장소’에 통신설비를 먼저 설치하려는 3사간 경쟁을 제한, 3사간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에서 3사간 통신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86억 600만원, S사(관련 자회사 포함) 55억 6,300만원, L사 58억 700만원)(의결 제2024-031호)

 **사실관계** 제주지역 7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동차대여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 후 이에 따라 대여요금 인상을 실행한 사례

 **판단**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지위를 가진 7개 사업자들이 대여요금을 합의하고, 합의로 결정된 대여요금을 적용한 행위는 제주지역 자동차대여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7,300만원, 고발)(의결 제2014-239호, 결정 제2014-047호)

2) 거래조건담합** 내용**

- 거래조건담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인천시 중구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6개 사업자들이 비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요금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위생용품(어메니티)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합의 후 실행한 사례

 **판단** 6개 사업자들의 위 행위는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에 해당하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소멸한 반면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함(시정명령)(의결(약) 제2024-127호)

3) 거래제한담합** 내용**

- 거래제한담합이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정위 심결례****〈kt사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사실관계** (주)케이티, S사, L사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판단** 이동통신 3사는 최소한 2015년 11월경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이하 ‘번호이동 순증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함. 이 사건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299억 1,900만원, S사 388억 600만원, L사 276억 6,400만원)(의결 제2025-135호)

 **사실관계** 지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이하 '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24개 사업자들이 실무자협의회 등의 모임 및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PHC파일 시장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 업계 전체적인 재고량 수준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재고량이 과다하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PHC파일 생산공장의 토요일무제 및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업자들의 생산량 감축 합의 및 실행행위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관련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위 사업자들의 상기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함(시정명령, 24개 사에 과징금 총 1,018억원)(의결 제2021-215호)

4) 시장분할담합

내용

- ◎ 시장분할담합이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할당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기계경비사업을 영위하는 A사와 S사가 지방 영업지역을 분할하고 영업금지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영업지역에서는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

 **판단** A사와 S사는 기계경비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 사업자인 점, 본건 시장분할담합으로 인해 해당 지방 지역에서는 A사 또는 S사가 거의 독점적인 영업을 하게 되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과징금 총 50억 9,600만원)(의결 제2014-294호)

5) 설비제한담합

내용

- ◎ 설비제한담합이란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6) 종류·규격제한담합

내용

- ◎ 종류·규격제한담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지역 소주 제조회사 대표 등의 모임에서 D사와 M사가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고 플라스틱 박스형 소주만 생산하기로 합의한 사례

 **판단**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수급상황, 고객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D사와 M사가 상호 의견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특정 종류의 제품을 생산 중지하기로 결정 및 실행한 행위는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의결(약) 제2000-043호)

7) 조인트벤처담합

내용

- ◎ 조인트벤처담합이란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서울시 동작구 소재 4개 LPG가스 판매사업자들이 각 사업자들의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판매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원료구매 및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례

 **판단** 위 사례에서 공정위는 LPG가스 판매사업자들이 개별운영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고 주요 업무인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정산, 단가 결정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가격이 유일한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LPG가스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총 500만원)(의결 제2014-230호)

8) 입찰·경매담합

내용

- ◎ 입찰·경매담합이란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 낙찰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 ◎ ①입찰가격담합, ②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③수익계약 유도, ④수수물량 등의 결정, ⑤경영간섭 등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입찰가격담합**이란,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합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②**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이란,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기 위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등을 의미함.
- ③**수의계약 유도**란,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해 합의하여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거부하는 행위, 둘러리로 입찰 참여 후 도중에 입찰 포기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④**수주물량 등의 결정**이란, 입찰참가자간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⑤**경영간섭**이란,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SMRT Mall 사업자 입찰

🔍 사실관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케이티와 P사는 퍼프컴과 함께 퍼프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2차 및 3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PD사를 매개체로 삼아 L사와 함께 퍼프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하고 둘러리인 L사를 탈락자로 하기로 합의

🔍 판단 이 사건 행위는 담합이 아니면 당해 사업을 수주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경쟁제한적 의도를 지니고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발주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행위는 본질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담합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져오지 않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71억 4,700만원, P사 71억 4,700만원, L사 44억 6,700만원, 고발 등)(의결 제2013-178호, 결정 제2013-012호)

〈kt사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 사실관계 (주)케이티, S사, L사, SJ사 등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및 낙찰가 인하를 막기 위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낙찰예정자 외에는 둘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

🔍 판단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실제로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KT 57억 4,300만원, S사 32억 7,200만원, L사 38억 9,500만원, SJ사 4억 1,700만원, 고발 등)(의결 제2019-179호, 결정 제2019-022호)

9) 사업활동제한담합

내용

- ◎ 사업활동제한담합이란 기타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단).
- ◎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참여 사업자 또는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되자,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 판단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행위는 PP사업자가 IPTV사업자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어렵도록 하여 PP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거래량이 감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사업활동도 방해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총 97억 2,600만원)(의결 제2011-153호)

10) 정보교환담합

내용

- ◎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라 함)를 알리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기타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됨(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 ◎ 구법상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정보교환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켰고,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합의의 추정요건으로 규정(위 3.2.2. 참조)하여,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 ◎ 정보교환이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사실상 경쟁변수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효과 등), 정보교환의 목적,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함.

(4)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 있다)를 말함.
- (예시)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한 경우,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 ◎ (원칙)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 ◎ (예외)아래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안함
 -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 ◎ (감경사유)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

(5) 행동지침

- ◎ 경쟁사와 불필요한 모임, 만남, 연락, 정보교환 등을 하지 않는다.
- ◎ 정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주관하는 경쟁사 모임이 예정된 경우 참석 전 미리 주제를 확인하여 민감한 정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는다.
- ◎ 필수적인 경쟁사 간의 모임이 진행되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모임 내용 등 관련 사실을 기록하여 직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중간 매개자(협회 기타 단체, 협력사 등)를 거쳐 주고받지도 않는다.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내용이 논의될 경우 명확하게 반대의를 표시한 후 퇴석하고, 관련 사실을 메일, 보고서 등으로 기록하여 직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 경쟁사 관련 정보는 경쟁사가 직접 공개한 공시자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입수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분명히 기록한다.
- ◎ 규제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간 공동대응이나 합의 등을 하지 않는다.

(6)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법 제42조) •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1호)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0% 범위 과징금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43조)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 발생 손해의 최대 3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 제109조 제2항) •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에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법 제115조)

(7)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내용

-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위법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제재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자 스스로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시정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발률을 높이고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

시점	대상	감면 내용	상세 감면 요건	공동 요건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최초 신고자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 자진신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단독 제공	공동행위 중단 & 조사 및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단독 제공한 두 번째 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초 조사 협조자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로 조사 협조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단독 제공	
	두 번째 조사 협조자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별건 담합 신고자에 대한 감면

- ◎ 진행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과정(공정위 심의일 이전)에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음.
 -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0% 범위 내 감경
 -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30% 감경

-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50% 감경
-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4배 이상인 경우: 면제

감면 제외 또는 취소 제도

- ◎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시정 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음.
- ◎ ①공정위 조사 등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 자료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거나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 석하지 않는 경우, ③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음.

4. Q&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Q.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및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관련시장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미치지 않고,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75%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
	A. 아닙니다. 시장점유율을 통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도가 있으나, 위의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Q. 소비자이익의 저해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Q.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의 경우, 해당 행위의 외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불공정 거래행위	Q.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몇 개월 전에 협력업체에 통보해야 할까요?
	A. 공정거래법에서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거래상대방이 대체 거래처를 찾는 데 필요한 여유기간(통상적으로는 최소 3개월)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를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항변을 듣기 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그룹사로부터의 구매물량을 순차 확대하여 기존 거래처 물량이 축소되어도 괜찮나요?
불공정 거래행위	A. 그룹사의 제품의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이 기존 거래처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사로부터의 구매물량을 확대한 경우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Q. 결합판매 상품도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나요?
	A. 결합판매 상품과 함께 개별 분리상품도 판매가 되고, 구매자가 자유롭게 분리 상품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반면, 구매자의 선택권 없이 오로지 결합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원판매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A.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 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직원판매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는 등의 행 위는 불공정한 직원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 누18489 판결).
불공정 거래행위	Q. 부당한 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나요?
	A. 우선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 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 로 하되, 이러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 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 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 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도 없다면 부득이 통상 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 적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Q. 그룹사와 거래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인가요?
	A. 그룹사와의 거래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지, 가격 등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불리하여 그 룹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Q.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혜택 등을 변경하기 전, 경쟁 사도 유사 요금제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 간 미팅 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A. 요금제의 가격/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미팅을 진 행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 경쟁사 담당자와 만남이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로 의심될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하며, 논의되는 내용들을 녹음하거나 회의록 을 작성하여 관련 사실을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쟁사 직원과 사적으로 만났는데, 사업에 대한 일정 및 가격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일정 정도는 알려주어도 될지요?
	A. 일정을 알려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 적으로 만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는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지 않 아야 합니다.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당한 공동행위	Q. 부득이 경쟁사 회선 임차를 진행할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나요?
	A. 경쟁사 회선임차 자체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경쟁사 회선임차 를 통해 담합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담합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담합 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회선 임차가 가능한 2개 이상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견적 제출 요청을 하고, 구 체적인 협의 시에는 사업에 필수적인 회선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록이 남는 메일 등으로 소통하며, 회의 시에는 녹음을 하거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Q. 경쟁사 간 모임 도중에 예상치 못하게 담합 의심 내용이 논의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명확하게 반대의를 표시하고 모임에서 이탈해야 하며, 단순히 침묵하고 자리를 지킬 경우에는 담합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임 이탈 후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의제기 및 이탈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Q. 임원이나 직책자가 아닌 실무자끼리 모임도 담합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실무자간 모임, 협의 등을 통한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Check-Point	O/X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재고가 충분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하였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 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였는가?	
	경쟁 대응을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협력업체, 유통업체 등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하였는가?	
불공정 거래행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물량을 현저히 축소하였는가?	
	그룹사와 비그룹사를 상대로 동시에 거래하면서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그룹사를 현저하게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그룹사의 경쟁사업자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는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저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 용역을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경쟁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 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상품, 용역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상품, 용역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가?	

구분	Check-Point	O/X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는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거래상대방에게 당사 또는 그룹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였는가?	
	그룹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등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않았는가?	
	그룹사에게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그룹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사와 가격,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인 의사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우연히 또는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내용이 논의될 경우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규제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경쟁사업자와 모임이나 연락을 하였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Chapter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2. 계약 체결단계 준수사항
3.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준수사항
4.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준수사항
5. 기타 준수사항
6. 위반시 제재
7. Q&A
8.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Chapter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입법목적 및 취지

- ◎ 하도급법(이하 'III 항목' 내에서는 법조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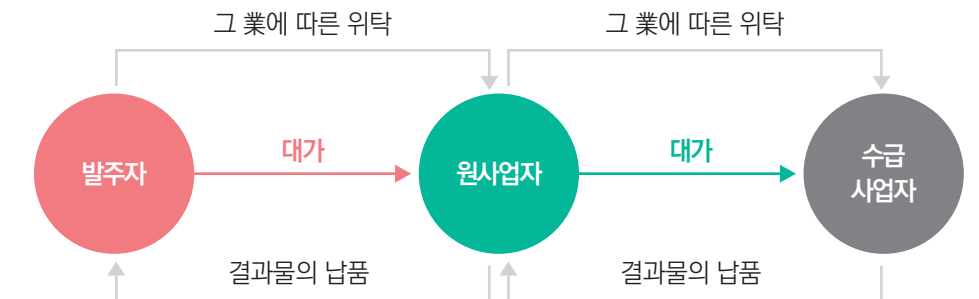
1) 하도급거래의 의의

-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법 제2조 제1항).
- ◎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
 - (예시)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 ◎ 수리위탁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 건설위탁
 -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사업자 등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예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예시)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하도급거래 당사자



- ◎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됨.
- ◎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 또는 시공 등을 위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포함됨.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원칙)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대기업, 중견기업)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일부 규정에서 수급사업자로 간주됨.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제13조), 보복조치금지(제19조), 탈법행위 금지(제20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제23조제2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의 조정 관련(제24조제4 제1항), 공탁(제25조제2), 과실상계(제33조) 등

※ 케이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함.

◎ 적용대상 기간 및 처분시효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단, 기술자료 관련 위반은 7년)한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위탁(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의미함.
-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도급법 우선 적용(법 제34조)

-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적용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름.

◎ 상생협력법과의 관계

-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규제 내용이 유사하나,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거래의 범위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보다 더 넓음.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위탁일 것을 요구하나,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의 업과 무관한 위탁이어도 적용됨.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됨.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됨.

2. 계약 체결단계 준수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 내용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위탁업무 시작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법정기재사항

-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함)의 내용
- ◎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 ◎ 하도급대금 연동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 협의하여 정한대로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연동의 예외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3조 제5항).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3조 제12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
-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 ◎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 ◎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 법 제16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 ◎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 ◎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위반행위 예시

- ◎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별도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별도의 날인없이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발주서를 발급하는 경우
- ◎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 원사업자가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서면을 별도로 회신 받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K사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

 **판단**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판단(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07호)

 **사실관계** N사는 2021. 1. 4.부터 2023. 5. 25.까지의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함

 **판단**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200만원)(의결 제2024-301호)

 **사실관계** H사의 경우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에, SD사의 경우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80%를 차지하는 계약에, SM사는 침대 프레임 제조위탁에서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 각각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

 **판단** 이러한 각 사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각 과태료 500만원)(공정위 보도자료 2025. 9. 22. 참조)

 행동지침

-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체결(서면발급) 전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수급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과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서면발급)하기 전에 변경된 과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 (법 제3조의4 제1항).

 부당특약 종류 및 예시

-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 부담한다는 약정
- 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 ㉔ 원사업자(발주자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㉔ 법 제16조의 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㉔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
- ㉔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

- 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소의 제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N사는 2022. 5. 7.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업무와 관련된 용역 위탁약정서를 교부하면서 그 약정서에 “을(수급사업자)은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계약해지) 조치시킴으로 하며, 미지급된 약정금(하도급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함

🔍 판단 용역위탁약정서 제5조 제5호 전단에서 퇴사(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규정한 ‘과격한 행동’이나 ‘분쟁 조장’은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계약 당사자간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경우이고, 위 조항 후단에서 신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이미 수행한 용역 위탁에 대한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객관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로 부당특약에 해당(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02호)

🔍 사실관계 K사 및 H사는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①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②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

🔍 판단 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 ②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이 원인임에도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위 특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시정명령)(의결 제2024 - 107호)

🔍 사실관계 S사가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190건의 금형 제조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갑의 검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②을의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자체보상금 이외에 갑의 요구에 따라 추가 배상액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사례

🔍 판단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불합격 판정에 이익제기를 할 권리 및 당사자간 귀책사유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협의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경고)(의결 제2025-122호)

🔍 사실관계 Y사가 수급사업자인 Z사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15%유보)하고 유보된 하도급대금은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사례

🔍 판단 해당 특약은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수급사업자가 장비업자, 현장노동자 등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발생시켜 지체상금이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80호)

📖 최근 부당특약 관련 법 개정 사항

-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 3개 부당특약

- ㉡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2025. 4. 1. 공포되어 2025. 10. 2.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적용됨.
- ㉡ (기대효과)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

📖 최근 부당특약 고시 개정 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추가함(부당특약 고시 2025. 5. 1. 개정 및 시행)

📖 신규 부당특약 유형 예시

- ㉡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 가능한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는 약정(유보 가능한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행동지침

- ㉡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서류에 넣지 않도록 한다.
- ㉡ 표준계약서 외 계약서는 법무검토를 받도록 한다.
-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는 기술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권리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 표지 '기타 사항'에 기재하여 법무검토를 받도록 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법 제4조).
-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 위반행위 예시

-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위반이 아닌 경우(정당한 사유) 예시

-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

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는 경우

- 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시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 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S사는 2019. 11. ~ 2019. 12.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 2.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 7,000만 원 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 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판단 S사 직원은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에게 S사가 영업하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분양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절하자 그 가액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서의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000만 원, 고발)(의결 제2024 - 121호, 결정 제2024-011호)

사실관계 S사는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판단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시정명령, 과징금 2억2,000만원)(의결 제2023 - 228호)

행동지침

- 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3.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내용

- 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법 제5조).

위반행위 예시

- ㉔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㉔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거래처를 특정하는 경우

위반이 아닌 경우 예시

- ㉔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내용

내용

- 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안 됨(법 제8조 제1항).
- ㉔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 등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㉔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봄(법 제8조 제3항).

부당한 위탁 취소 예시

- 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

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예시

- ㉔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

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㉔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태블릿 PC(K-PAD) 위탁 취소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수급사업자에게 태블릿 PC(K-PAD) 17만 대(510억 원)를 2010. 9. 13. 제조 위탁한 후 2011. 3. 8.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고자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 발주 계약을 하면서 17만 대 위탁 계약은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였음

판단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Operating system) 문제로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케이티는 검수 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하였음. 케이티와 수급사업자 간 17만 대 무효화에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음에 비추어 부당 위탁 취소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0억 8,000만원)(의결 제2014 - 134호)

사실관계 E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

판단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피심인의 '호반 송도' 현장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절과 피심인 내부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E사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 3억 6,000만원)(의결 제2024-245호)

사실관계 K사는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8월경 납품 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

판단 수급사업자가 아직 납품하지도 않은 재고 총 1,970개에 대해 어떠한 검사도 없이 부적합품으로 단정하고 관련 대금을 자신이 임의 산정한 손실비용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인수 요청에도 품질보증을 이유로 사실상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수령거부로 판단(시정명령)(의결 제2024-263호)

🔍 사실관계 Y사가 인버터 제품을 제조하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주를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없이 발주처의 발주량 감소를 이유로 일부 발주를 취소한 사례

🔍 판단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 변동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54호)

📌 행동지침

- ◎ 판매부진, 경영상황 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지 않는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내용

- ◎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9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거대한 건설공사(담·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D사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음

🔍 판단 목적물을 납품하는 경우에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위반이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의결 제2024-340호)

🔍 사실관계 K사는 2022. 4. 14. ~ 2022. 7. 19. 기간동안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임가공 물품 14,550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목적물은 원사업자에게 입고되는 즉시 회로검사(기능검사)와 구조검사가 진행되는 단순 임가공 품목으로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의결 제2024-263호)

🔍 사실관계 (주)케이티디에스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1개 수급사업자에게 97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용역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최소 1일, 최대 23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한 사례

🔍 판단 법 제9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검사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데, (주)케이티디에스가 검사 결과를 지연하여 통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73호)

📌 행동지침

- ◎ 검사기준은 계약 체결시 양자간 협의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게 정한다.
- ◎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부당 반품의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10조 제1항).

📌 위반행위 예시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㉔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㉔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 🔍 사실관계** S사는 2016. 4. 수급사업자에게 총 72개의 엔드볼트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5. 수령하였으나, 그 중 49개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 🔍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의결 제 2022-087호)

행동지침

- ㉔ 발주자의 발주 취소 등 발주자와 관련한 사유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을 해서는 안 된다.
- ㉔ 사전에 정해진 공정·타당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불합격인 경우 반품을 한다.

(5) 대금감액의 금지

내용

- ㉔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 ㉔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법 제11조 제2항)
- 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 예시

- 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㉔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㉔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

- 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함)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위반행위 예시

- ㉔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 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㉔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전년도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㉔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 ㉔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 🔍 사실관계** U사는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2020. 4월 1개, 2020. 9월 16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감액
- 🔍 판단**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6,700만원)(의결 제2024-322호)

🔍 사실관계 N사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감액대금 일부인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연이자 408,256원 및 나머지 감액대금 11,409,475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

🔍 판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미지급한 행위, 그리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으로 판단(시정명령, 지급명령 포함)(의결 제2023-167호)

🔍 사실관계 H사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D사에게 너트 제조를 위탁하여 납품받은 내역을 정산하면서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 지급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3.85%를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사례

🔍 판단 H사가 D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하여 D사와 합의한 사실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설령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익월 말 현금 정산으로 30일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 근거한 적정 감액 비율은 0.23~0.43% 수준이므로 이의 9배~16배를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감액에 해당(시정명령, 지급명령)(의결 제2025-089호)

🔍 행동지침

- ☞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므로 편람 등을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6)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12조의2).
- ☞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 2368 판결).

🔍 위반행위 예시

- ☞ 원사업자의 이익 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강요하는 행위
- ☞ 다른 수급사업자도 협찬금을 부담함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 다량 거래를 조건으로 미리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 소프트웨어 작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을 원사업자의 사업장에 상주시켜 실제로는 발주와 관계없는 사무를 보게하는 행위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B사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관련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기간동안 자신의 부담 부분인 가스대금 및 장비 임차료 총 6천3백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음

🔍 판단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시정명령, 과징금 4,900만원)(의결 제2024-046호)

🔍 사실관계 Y사는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 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킴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 판단 자신과 자신의 소속 현장소장에게 부과된 벌금 2백만 원 전부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시정명령)(의결 제2021-311호)

🔍 행동지침

-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 ☞ 부당한 특약 내용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7)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금지

🔍 내용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 기술자료란?(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기술자료제공요구서 교부 의무(법 제12조의3 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법 제12조의3 제3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기술자료 유용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T사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음

**판단**

RFQ 양식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2. 재료비 상세내역”의 “Maker, Grade(Spec), Usage m²(Uom Base)” 부분과 “3. 가공비 상세내역”의 “Cycle, 준비시간, Net time” 부분 등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이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한 것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2억 5,000만원)(의결 제2024-314호)

**사실관계**

J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하여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판단**

제1도면은 이를 바탕으로 금형을 제조하거나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제2도면은 금형에 적용된 공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과 치수가 포함된 것으로 금형을 제조하거나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 요구한 것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000만원)(의결 제2024-037호)

**사실관계**

H사가 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을 제안하였다 거절당하자,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수급사업자에게 A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하고, 그 외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금형 도면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

**판단**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4억 7,400만원)(공정위 보도자료 2025. 7. 23. 참조)

행동지침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사업제안/수행에 필요한 협력사 기술자료는 반드시 Techcare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다.
-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협력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한다.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급한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함(법 제16조 제4항).

위반행위 예시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변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조정하는 경우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T사는 2021. 9. 3. 및 2022. 3. 31.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위반(시정명령)(의결(약) 2023-067호)

사실관계 H사는 2021. 1. 31.부터 2023. 4. 7.까지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 웅스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34회), 30일을 초과(지연일수 15~631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함(지연일수 76~637일, 지연이자 1,800만원).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시정명령, 과징금 4,500만원)(의결 2024-302호)

행동지침

-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경 등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내용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2 제1항).

조정 신청 사유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됨(법 제16조의2 제10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2 제11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사유

-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 조정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됨(법 제18조).
- ⦿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위반행위 예시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 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가격에 관한 정보 등)
-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PW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허용행위 예시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2025년 개정사항(2025. 1.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 ⦿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 ⦿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P사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협력사 임원 임기를 정하고 만료 시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하였으며,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되어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 판단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5억 8,000만원)(의결 제2022-268호)

행동지침

- ☉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과 관계없이 특정 재하청사와 거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 선금금의 지급 의무

내용

-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이하 본 항목에서는 '법정지급기일')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제1항).
-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 선금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이하 '선금금 보증서'라 한다)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금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
- ☉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면 됨.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D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금 69,71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금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판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시정명령, 지급명령 포함)(의결 제2024-314호)

🔍 사실관계 B사는 2016. 6. 15. 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22,643,500천 원에 체결하고, 2016. 9. 7. 발주자로부터 동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264,350천 원을 선금금으로 지급받았음

B사는 2016. 10. 1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3구역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으나 이 사건 제3구역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대금 2,327,72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금금 232,772천 원을 공사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또한 B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발생한 선금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판단 선금금 및 선금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판단(시정명령, 지급명령 포함)(의결 제2021-039호)

행동지침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사업의 협력사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비율로 선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한다.

(2)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 됨(법 제12조)

위반행위 예시

-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준수사항

- ☉ 자신이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경우 또는 장비 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내용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목적물의 수령일이란?

- ☉ 제조·수리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 ☉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
- ☉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

-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 제2항).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3항).
- ☉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됨(법 제13조 제4항).
- ☉ 어음 지급의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됨(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7.5%)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수수료율)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7항).

- ☉ 지연이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8항).

📖 판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 19773 등 참조)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S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 1. 20.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4. 2. 8.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6천 원 및 어음 할인료 36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2021. 1월 ~ 2023. 11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미지급하였고, 2020. 6월 ~ 2023. 11월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판단**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시정명령, 과징금 1억 6,200만원)(의결 제2024-281호)

🔍 사실관계 D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전체 하도급대금 710,723,499원 중 603,968,499원을 지급하지 않음

🔍 판단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 판단(시정명령, 과징금 3억 6,200만원)(의결 제2024-259호)

📌 행동지침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등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도급대금은 하자 등 손해 발생과 관련한 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지급되도록 한다.
- ☉ 지급기한을 넘긴 하도급 대금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내용

- ☉ 발주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 직접 지급 사유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 제2항).
-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됨(법 제14조 제3항).
-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법 제14조 제4항).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5항).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발주자 I사는 2022. 4. 25.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 7. 29.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후 발주자 I사는 2023. 6. 15.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I사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 9. 30. '경암 파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2억 2,63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음

🔍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시정명령, 지급명령 포함)(공정위 보도자료 2025. 2. 10. 참조)(의결 제2025-018호)

📌 행동지침

- ☉ 수급사업자의 하청업체가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다.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내용

-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케이트리 해당함)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방법과 소요기간

(2) 보복조치의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19조).

5. 기타 준수사항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3) 탈법행위의 금지

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0조).

6.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 행위중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법 제25조)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법 제25조의3)
과태료	· 조사거부·방해 등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임직원/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출석, 자료미제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미/허위공시 등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직원/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회피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위반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사항 서면 미기재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0조의2)
벌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협조 요청 등)	· 벌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5점 초과)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법 제26조) - 경고(서면조사) 0.25점, 경고(신고 또는 직권조사) 0.5점 -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 과징금 2.5점 - 고발 3점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형사처벌	· 하도급대금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 3억 이하의 벌금(보복조치 금지 위반)(법 제30조)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31조)
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 반품의 금지,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발생한 손해의 3 배(단, 기술자료 유용금지 위반의 경우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법 제35조).

7. Q&A

- ※ ‘최근 하도급법 개정(2025. 9. 16. 법 개정, 2025. 12. 17. 시행)
-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 가능
 -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 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함께 청구 가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Q. 고객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과업을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협력사와 아직 서면계약체결 전인 상황인데 구두로 먼저 전시공 요청을 해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서면 계약체결 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발급 없이 구두로 전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Q.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처의 공문을 받고 과업 수행을 먼저 시작 하려고 합니다. 발주처 공문을 근거로 KT도 협력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과업이행을 우선 지시해도 될까요?
부당특약	A. 안됩니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서면 계약체결 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공문과 상관없이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서면 계약서 발급 없이 구두로 전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Q.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A. 편람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법무검토를 받아 부당한 특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수급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취소한다는 서면 합의를 하면 부당 위탁 취소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금지	A. 아닙니다. 해당 서면합의가 수급사업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강요에 의해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당한 위탁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제안 중 필요한 자료가 협력사의 기술자료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술자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냥 구두로 자료를 요청해서 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메일 등으로 협력사에게 관련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에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답변이 오는 경우 반드시 Techcare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아야 합니다.
	Q.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협력사에서 기술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제안서 제출 직후 유사한 형태의 입찰공고가 나와서 기존에 받았던 기술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A. 안됩니다. 협력사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료는 당초 이용목적 외로 사용하시면 안 되며 이 용목적과 기한이 종료된 경우 폐기하셔야 합니다.

선금금의 지급 의무	Q. 발주처에서 선금을 지급 받았으나 협력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선금에 대해서도 지급기한이 있나요?
	A.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사에게 선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넘긴 경우 법 위반입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초과한 기간만 금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Q. 발주처에서 기성금, 잔금을 받은 경우 협력사에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사에 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확인 즉시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Q. 발주처와의 문제로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협력사는 업무이행을 완료하였고, 검수 및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문제는 없는데 협력사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지급기한 내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력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완 료하였다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에서 더 짧은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 을 통지받은 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8.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체결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Check-Point	O/X
서면 교부 의무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부당특약	법무검토를 받지 않고 회사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 하였는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내용 (편람 해당 내용 참고)이 있는가?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없이 비용절감 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였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계약이행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Check-Point	O/X
위탁취소, 수령거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계약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의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는가?	
부당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반품을 하였는가?	
대금감액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대금을 계약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 하여 지급하였는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상 의무 없는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였는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였는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기술자료는 Techcare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았는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해당 사 업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부당경영간섭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였 는가?	
	수급사업자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등에 부당 경영 간섭을 하였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대금 지급 단계 준수사항

구분	Check-Point	O/X
선금금의 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음에도 협력사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았 는가?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 지 않았는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 급하지 않았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Chapter IV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2.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3. 위반 시 제재
4. Q&A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Chapter IV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입법목적 및 취지

- ☉ 대리점법(이하 'IV항목'내에서 법조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이라 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강한 의존성,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 유통기능의 일체성 등 대리점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대등당사자 지위의 형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2) 정의 및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 ☉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함.
-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 ☉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함.
- ☉ “재판매”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함.
- ☉ “위탁판매”란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함.
- ☉ (예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함.
- ☉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함.
- ☉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적용범위

- ☉ ①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②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③기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인 거래는 대리점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한 소수에 대한 판매를 위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대리점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

2.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1) 계약서 작성의무

내용

-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아래의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함(법 제5조 제1항).

법정기재사항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상품의 반품조건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

-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 ☉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시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함.

행동지침

-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며, 계약서를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구입강제 금지

☞ 내용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6조).

☞ 세부 유형

- ☉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법 위반 예시

- ☉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 ☉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 ☉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품,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 상품·용역을 대리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 내용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7조).

☞ 세부 유형

-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법 위반 예시

- ☉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공정위 심결례

- ☞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을 대리점에 위탁판매하는 S사가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 대리점이 직접 가입한 디지털방송 상품 30건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 35건을 양수 받도록 강요한 사례
- ☞ **판단** S사는 위 상품 인수 강요를 통해 신규 대리점이 납부한 상품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 및 신규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수수료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추가로 얻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함(시정명령, 과징금 3억 5,000만원)(의결 제2020-28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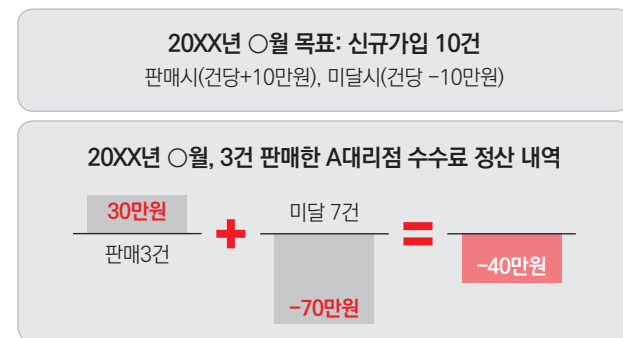
☞ 행동지침

- ☉ 대리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기타 금품, 향응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당사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 판매목표 강제 금지

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8조).
- 판매목표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제 대리점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실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및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됨.



대리점이 판매 활동(판매3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감지표운영(미달 7건)으로 결과적으로 대리점이 불이익
받는 구조(40만원 차감)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세부 유형

- 아래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
 -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외상매출기간 단축, 지연이자율 인상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

법 위반 예시

-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 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T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에 월별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그 다음 4개월 동안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감액한 사례
- 판단** T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한 후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액하는 행위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의결(약) 제2023-008호)

행동지침

- 설정된 판매목표 달성에 대해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자발적인 달성을 유도한다.
- 판매목표 미달 시 수수료 차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5)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9조).

세부 유형

-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훼손된 상품 등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기존의 매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 ☉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대리점 관리수수료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2,633개 대리점들에 대하여 총 27,582,283,700원의 관리수수료를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하고, 관리수수료 검증을 위한 상세정보 접근에 제한(고객 ID당 하루 70건 한정 확인 가능)을 둔 사례

 **판단** (주)케이티가 대리점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리점들에게 수수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리점들의 문제제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이익을 방치한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경고)(의결 제 2020-291호)

 **사실관계** 대리점과 계약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위탁판매하는 L사가 상품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대리점에게 기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환수한 사례

 **판단** 모집수수료 환수제도 자체는 대리점의 부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기는 하나, L사의 서비스 제공 불능 등 L사 측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함(시정명령)(의결(약) 제2023-019호)

행동지침

- ☉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로 대리점 관리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않는다.
- ☉ 위탁대리점의 불완전 판매행위 발생 시 지급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을 삭감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리점 계약서상 불완전 판매행위를 구체화한 완전 판매 가이드 내용 및 수수료 삭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대리점에 지속적으로 공지, 설명한다.
- ☉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SI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간판, 매장 리뉴얼 비용 등을 대리점에 전가시키지 않는다.
- ☉ 수수료 정산에 대한 대리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대리점에게 결과를 설명한다.

(6) 경영간섭 금지

내용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10조).
- ☉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위안으로 보지 않음.

세부 유형

- ☉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 법 위반 예시

- ☉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 ☉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 ☉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S사가 판매대리점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대리점의 판매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해당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

☞ **판단**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공급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대리점이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S사가 이러한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함(시정명령)(의결(약) 제2024-045호)

☞ **사실관계** S사가 수입 차량의 재판매를 위탁한 12개 대리점들에 대하여 ①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게 영업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②상품 판매가격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③전시장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 외에서 차량을 판매한 대리점에게 인센티브를 차감한 사례

☞ **판단** S사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사에 반하여 영업정보 제공을 강요하며, 영업활동의 제약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시정명령)(의결(약) 제2025-063호)

☞ 행동지침

- ☉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 해임 또는 근무조건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리점의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 대리점을 통해 대리점의 재위탁사인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상품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내용

-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11조).
- ☉ 확인요청에 대한 거부 또는 회피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주문내역의 미기록·삭제·열실 등을 이유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확인요청에 대한 무응답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연응답의 경우, 전체 주문내역 중 일부분의 주문내역만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됨.

☞ 법 위반 예시

- ☉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회피하지 않는다.

(8) 보복조치 금지

☞ 내용

- ☉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법위반 사실의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조사 또는 서면실태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하여 거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법 제12조).

☞ 법 위반 예시

- ☉ 대리점이 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조건이나 결제조건 또는 지원 사항 등을 다른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23조) •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1항)
과징금	•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25조)
과태료	•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시 5천만원, 보관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법 제32조)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1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31조)
손해배상 책임	• 피해자 발생 손해의 최대 3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 제34조 제2항)

4.

Q&A

Q. 대리점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대리점에게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나요?
A.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연장 시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대리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 당사가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훼손된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A.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Q. 회사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 대리점별 판매목표의 할당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판매목표 미달 시 대리점에게 장려금 차등, 계약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짐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면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장려를 하고자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5.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Check-Point	O/X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계약기간, 반품조건, 대금 지급 시기, 계약해지 사유 등 주요 계약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체결하였는가?	
	대리점 거래 개시 시점까지 계약서 작성 및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구입강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였는가?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약세서리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는가?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대리점에게 협찬금, 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였는가?	

구분	Check-Point	O/X
판매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료 차감, 신제품 공급 중단, 단말 차별 공급, 미판매분 반품 금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였는가?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는가?	
	당사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경영간섭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 지연한 경우가 있는가?	
보복조치	당사 또는 당사 임직원을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Chapter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3. 중요정보의 공개제도
4. 위반 시 제재
5. Q&A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Chapter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개요

(1) 입법목적

- 표시광고법(이하 'V항목'내에서 법조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표시, 광고의 정의

용어의 정의

-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또는 상품, 용역(이하 ‘상품등’)에 관한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함.
- “광고”란 사업자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또는 상품등에 관한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전단, 인터넷,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함.
- 현행 표시광고법은 표시와 광고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를 정함에 있어서 양자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판례

🔍 사실관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 아니라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페이지에 문답형식으로 신용조회에 관한 설명을 게시한 것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 판단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원고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광고에 해당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1)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성립 요건

- 부당한 표시·광고가 성립하려면 ①표시광고법에서 열거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소비자오인성”), ③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오인성 판단 기준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소비자오인성은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 표시·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어떤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아야 하나,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을 수 없는 피치 못할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이하 ‘제한사항’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
 -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크기로 기재되어야 하고, 색상 등을 고려할 때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함.
 - 제한사항은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일부만 동안만 노출되거나 많은 설명 중 극히 일부로만 제시됨으로써 광고의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됨.
 -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함.
 -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됨.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

-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사업자가 특정 내용을 은폐·축소·누락한 경우,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2) 세부 유형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내용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전자는 적극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진술·표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직접 초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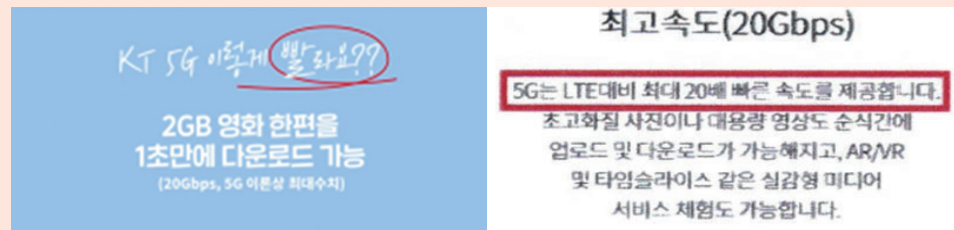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한 행위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5G 서비스의 속도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HD급 2GB 영화 1편 다운로드 시 5G 0.8초', 'KT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전송'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이론상 최고속도'라거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한 사례



판단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를 본 일반적인 소비자는 케이티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20Gbps이고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의미라고 인식할 것이나, 실제로 20Gbps는 5G 기술 자체의 핵심성능지표일 뿐 케이티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로 볼 수 없고, 현재는 20Gbps라는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케이티가 서비스 개시 당시 할당받았던 28GHz 주파수 대역의 800MHz 대역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술 수준 하에서 계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최고속도는 3.78Gbps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본건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과징금 139억 3,100만원)(의결 제2023-108호).

표시·광고 실증제도

-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제5조).
- 공정위는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련된 사항의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 시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의 견해, ④학술 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 ①**시험결과**의 경우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함.
 - ②**조사결과**의 경우 사업자와 독립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자 및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함.
 - ③**전문가, 전문가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내용이어야 함.
 - ④**학술문헌**의 경우,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고,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함.
-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광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

행동지침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과장되지 않은 광고를 기획, 제작한다.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절대적 표현("1위", "100% 효과", "최초", "최대", "최저가" 등) 사용 시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
- 실증자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한 기관에서,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내용

-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특정 정보가 은폐·누락·축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은폐·누락·축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 표시·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사용·이용방법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

- ◎ 상품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기 위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하는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통고급시계”, “○○○ Switzerland” 라고 광고하는 행위
- ◎ 이월상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하게 전시·판매하면서 이월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 ◎ 경품행사를 표시·광고하면서 경품인 휴대폰을 수령하기 위하여 특정 통신사와 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밝히지 않는 경우
- ◎ “~~분야 1위(○○닷컴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GiGA LTE 서비스 커버리지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GiGA LTE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등과 같이 광고하고,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기지국 분포 지도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기재하여 광고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광고를 본 일반적인 소비자는 GiGA LTE 서비스가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 서비스이고, 양자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서비스의 최대속도가 1.17Gbps이며, 이러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커버리지가 넓다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나, 실제로는 3CA LTE-A는 수도권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고, GiGA LTE 서비스 역시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므로, 본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iGA LTE 서비스의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의결 제2019-253호).

- ◎ 최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5. 6. 19.)

-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함.
 - 사례: 가슴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함.
 - 사례: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함.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

행동지침

-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축소, 누락하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 잘 보이지 않도록 표기하지 않는다.
-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 ◎ 기한이 명시된 할인행사를 광고하는 경우(“기간한정 딱 1주일만 특별할인” 등) 해당 기한 종료 이후에도 사실상 동일한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내용

-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등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3호).
- ◎ 다른 사업자의 상호, 상표, 상품 명칭 등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은유적 표현, 유사한 발음·기호·상징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함.
- ◎ 특정 경쟁사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경쟁업체 일반에 비해 우수하다는 취지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함.

비교 시 유의사항

- ◎ 비교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함.
-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가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가격, 품질, 성능,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 간에 동일하지 않거나,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 자기의 최신 잉크젯 프린터와 이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경쟁사업자의 구형 잉크젯 프린터 간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자기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이용요금과 경쟁사업자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이용요금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이용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 광대역 LTE 기지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광대역 LTE-A 서비스(광대역 LTE망과 일반 LTE망의 묶음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경쟁사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5G 서비스 속도

🔍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대리점에 부착한 포스터를 통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 지도 및 주요 변화가 지명과 해당 11개 장소에서의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를 기재함으로써 전국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빠른 것 같이 광고한 사례



지역	속도 (Mbps)
전국	847
서울	839
부산	740
대구	765
인천	761
전북	567
충청	639
경북	592
경남	785
제주	779

판단 비교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나, 케이티는 내부직원이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만을 측정하였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케이티가 측정한 속도가 해당 장소에서의 속도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케이티의 5G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라고 판단함(시정명령, 과징금 139억 3,100만원)(의결 제2023-108호)

행동지침

- ⦿ 경쟁사 상품과 비교할 경우 자기의 상품과 가격, 성능, 품질, 서비스내용 등이 유사한 경쟁상품을 선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비교하며, 객관적인 비교 근거를 명시한다.
- ⦿ 경쟁사 상품과 비교할 때 허위, 과장된 성능이나 품질을 제시하지 않는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내용

- ⦿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함(법 제3조 제1항 제4호).
- ⦿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교 표시·광고가 아닌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 승용차의 안전성을 비교하면서 실제 운행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주행테스트에서 경쟁사업자의 상품이 전복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크게 부각하여 경쟁사업자 상품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소셜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W사가 경쟁사업자인 C사의 상품 가격과 관련하여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바가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고한 사례



판단 본건 W사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인 C사가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게 하는 등 비방성이 인정됨(시정명령)(의결 제2014-081호)

행동지침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만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않는다.

(3) 추천·보증 형식의 표시·광고에 대한 부당성 판단

내용

-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래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함.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용역을 포함)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의 경우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당성을 판단함.

부당성 판단 원칙

-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함.
-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됨.
-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함.
-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안 됨.
-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등)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행위
-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브랜드명], @[상품명] 등과 같이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
-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음반 및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K사가 광고대행사 및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유통·홍보하는 음원·음반에 대한 추천·홍보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의 게시물 등에 자신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례

 판단

K사는 게시물 대상 음원·아티스트, 광고 문구 등을 직접 기획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광고대행사에 지시하는 한편, 심한 욕설, 저급한 표현 등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문구를 제한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라는 별도의 요청은 하지 않았고, 내부 법무검토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함(시정명령, 과징금 3억 9,000만원)(의결 제2025-043호).

행동지침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지 않는다.
- 후기 또는 리뷰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협찬 여부 및 상업적 의도를 명확히 고지한다.
-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며, 동영상 통하는 경우 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상품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는 표시·광고 시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법 제4조).
- 공정위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 방법을 고시하고 있으며, 업종별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의 경우 광고 시 ①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②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③통화료 외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가 중요정보에 해당
 -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표시·광고 시 ①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②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③중도해약시 환불기준, ④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⑤소비자판매 가격(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문구)이 중요정보에 해당

3. 중요정보의 공개제도

4.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7조)
임시중지	·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8조)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범위의 과징금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9조)
과태료	· 고시된 중요정보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실증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중지 명령 위반 등 1억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9조)
손해배상 책임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법 제10조) ·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법 제11조)

5. Q&A

Q. 광고 내용이 일부는 사실인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광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 맥락상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00.12.14. 선고 2000누4219 판결).
Q. 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Q.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는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 경품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지급되는 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명에 한함” 등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광고에 명시하여 하며, 이러한 명시 없이 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언서 체험기나 블로그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에서 협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상품, 할인 혜택 제공, 수수료 지급 등) 이러한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체험기나 후기 등을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Check-Point	O/X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는가?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된 품질이나 성능을 전체에 관련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한 내용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최초’, ‘최고’, ‘1위’, ‘유일’ 등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실증할 수 없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광고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표시·광고한 적이 있는가?	
	경품, 지원금, 할인 등 혜택의 제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표시·광고하였는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게 표기, 배치하였는가?	
부당 비교, 비방하는 표시·광고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에서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경쟁상품을 선정하였는가?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였는가?	
	경쟁사 상품과 비교할 때 허위, 과장된 성능이나 품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노출하여 광고한 적이 있는가?	
기타	추천·보증 형식의 광고의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천·보증하였는가?	
	추천·보증인의 추천·증내용을 가공, 변형, 재구성한 적이 있는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추천·보증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였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Chapter V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3. 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4. 위반 시 제재
5. Q&A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Chapter V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입법목적

- ◎ 전자상거래법(이하 ‘V항목’내에서 법조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이라 함) 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점포거래와 달리 비대면, 선지급 후 배송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점포거래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전자상거래 법은 이러한 위험요소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용어의 정의

- ◎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 ◎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광고물, 방송, 신문, 비대면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단,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 ◎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3)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 ◎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용역 거래에 대해 적용됨.
- ◎ 인터넷에서 상품의 광고를 본 후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이나 판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1)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내용

-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6조).
- ◎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음.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몰 이외의 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거래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의 거래기록은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소비자의 거래기록과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함.

행동지침

- ◎ 표시·광고, 계약내용,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및 계약 이행 내역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 ◎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취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됨.

판례

☞ **사실관계** 사업자 A가 B라는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권유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를 받아본 후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

☞ **판단** 광고대행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전송 등 계약 체결의 주요 과정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한편 A가 사업자인지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B가 판매하는 광고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실상의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서울남부지법 2022나62695 판결).

(2) 사업자 정보 표시의무

※ 내용

-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 6가지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법 제10조).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링크로 연결된 화면을 통해 표시 가능)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위 표시사항들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함.
- ◎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APP 등) 위 표시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footer 영역 등) 할 수 있음.

※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올레TV모바일’의 초기화면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안드로이드 및 iOS APP인 ‘올레TV모바일’의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은 사례

🔍 판단 케이티가 운영하는 ‘올레TV모바일’ APP은 월정액 이용권 및 영화 등 VO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몰’에 해당함에도,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과태료 300만원)(의결(약) 제2022-017호)

※ 행동지침

- ◎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연결한다.

(3)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 내용

-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함(법 제13조).

-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
-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공정위 심결례

〈kt사례〉 올레TV 내 사이버몰 거래조건 정보

🔗 사실관계 (주)케이티가 올레TV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및 패키지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사례

🔍 판단 케이티는 위 상품들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단순변심의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의결(약) 제2014-103호).

※ 행동지침

- ◎ 상품페이지 작성 시 제품명, 가격, 배송비, 교환/반품 조건 등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한다.
- ◎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한다.

(4)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내용

-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함(법 제20조).
 -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고지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매체의 첫 번째 면에 고지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고지
 -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 고지
-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D마켓’이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D사가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D마켓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판매자 및 사업자 판매자에 대해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열람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사례

 **판단**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및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미확인,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반면, 개인 판매자의 일부 신원정보 미확인 및 미제공 행위의 경우 개인간 거래의 양태가 다양하여 개인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점, D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의 판단을 유보하였음(심의절차종료)(의결 제2025-020호)

(1) 부당한 소비자 유인 금지

내용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작,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부당한 유인행위 예시

- ☉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 ☉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 ☉ 사이버몰 내 화면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 사이버몰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게시한 경우
- ☉ ‘월 대여료가 0원’ 및 ‘월 대여료 할인’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경우
- ☉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앰플을 판매하면서 추가 구성품 용량이 정품보다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40만원 상당의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을 한 경우

공정위 심결례

 **사실관계**

(주)케이티뮤직이 올레뮤직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olleh club 50%할인” 등)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은 사례

 **판단**

케이티뮤직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올레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올레뮤직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을 할인해주었는데, 이 때 일정한 포인트가 소비자의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되었음에도 광고화면에 포인트가 차감되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시정명령, 과태료 700만원)(의결(약) 제 2013-093호)

행동지침

- ☉ 옵션 구성, 세트 상품, 결합 상품 등의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그 구성품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3. 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 ◎ 표시·광고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최초’, ‘최고’, ‘1위’ 등 절대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2)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 방해 금지

내용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세일상품은 환불 불가’, ‘환불이 아닌 교환 또는 적립금 대체만 가능’ 등 법령에 정해진 청약철회등의 기준에 비해 무거운 요건을 두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음.

소비자의 청약철회, 해제권

- ◎ 소비자는 아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및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청약철회 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성격상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공정위 심결례

🔍 사실관계 케이티커머스(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등에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상품과 다르게 배송되는 등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해외 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배송된 상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사례

🔍 판단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 상품과 다르게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그보다 짧은 7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하고, 해외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배송된 것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것 역시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시정명령, 과태료 600만원)(의결(약) 제2012-053호).

🔍 사실관계 M사가 사이버몰에서 의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교환/반품 조건에서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안내하고, 사이즈 미스 또는 언더웨어, 수영복의 경우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사례

🔍 판단 M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이즈 미스 또는 언더웨어, 수영복의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 거짓된 청약철회 기간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판단함(시정명령, 과태료 250만원)(의결 제2025-054호)

행동지침

- ◎ 법에 정해진 청약철회등의 기준에 비해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법에 따라 청약철회등의 예외사유를 둘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3) 기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내용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 제1항).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만,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예시

- ☉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 행동지침

-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설명·고지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지 않는다.

(4)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다크패턴 금지

1) 입법 취지 및 내용

☞ 입법 취지

- ☉ 다크패턴(또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함.
- ☉ 대다수의 다크패턴 유형들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제재될 수 있으나, 위 조항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등 신설되어 2025년 2월 14일부 시행되었음.

☞ 내용

- ☉ 법 개정으로 새로 규율되는 6개 다크패턴 유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각 유형별 세부 의무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함.

구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작위 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제13조 제6항
부작위 의무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들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구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부작위 의무	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2) 숨은 갱신

☞ 내용

- ☉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최초 이용할 시 미리 소비자로부터 향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증액 또는 전환 시점(대금 결제일 기준) 이전 30일의 기간 내에 별도 동의 및 고지가 필요함.
- ☉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팝업창을 통해 동의받도록 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함. 단,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고 해당 팝업창을 닫는 등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행동지침

- ☉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된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순차공개 가격책정

☞ 내용

- ☉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함)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은 사이버몰에서 재화의 내용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는 화면을 의미하며,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검색하여 노출되는 검색 결과 화면, 상품 사진과 가격이 표시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이 이에 해당함.
 -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란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숙박 상품에 필수 부과되

는 봉사로, 청소비, 세금, 수수료(현지에서 별도 결제되더라도 포함) 등과 같이 소비자가 이를 지급하여야만 재화등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함.

- ㉠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해당 항목이 제외된 사유를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함.
 - 배송비, 설치비 등의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총금액에 포함되기는 하나(단, 특급 배송비나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비용 추가되는 경우에는 총금액에 미포함), 해당 비용이 소비자의 선택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행동지침

- ㉠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한다.
- ㉠ 제휴 카드 사용, 멤버십 가입 등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 등에 따라 재화등의 가격이 할인될 수 있는 경우, 첫 화면에서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명시하고, 상품 상세 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고지한다.

4)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내용

- ㉠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를 묻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 ㉠ 소비자가 직접 옵션을 선택(클릭 또는 터치 등)하는 행위를 해야만 그 선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 ㉠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기본 선택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법 위반 예시

- ㉠ 주된 상품의 상품 상세화면, 결제화면 등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 ㉠ 회원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 의사가 있다는 선택항목을 미리 선택해두고 제공하여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

행동지침

- ㉠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를 묻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옵션을 선택(클릭

또는 터치 등)하는 행위를 해야만 그 선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5) 잘못된 계층구조

내용

- ㉠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함)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 여러 옵션이 동등하게 구성된 화면을 보아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선택항목이 병렬적이고 무차별하게 구성되어야 함.

법 위반 예시

- ㉠ ‘취소’ 버튼을 구석에 작게 만들고 ‘동의’ 버튼은 상단에 크게 배치하는 행위, ‘취소’ 버튼의 색깔을 배경색과 같이 회색으로 처리하여 그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는 행위
- ㉠ 상품 구매 과정에서 무료 옵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유료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회원가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다른 선택항목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해당 선택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회원탈퇴, 계약해지 과정에서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 대안의 선택항목을 ‘회원탈퇴’, ‘계약해지’의 선택항목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행동지침

- ㉠ 소비자에게 구매·이용, 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탈퇴, 해지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각 선택항목의 인터페이스를 병렬적이고 무차별하게 구성한다.

6) 취소, 탈퇴 등의 방해

내용

- ㉠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만으로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 계약 관계의 해소를 위해 정산이 필요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구매, 가입, 체결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법 위반 예시

- 회원가입, 구매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능함에도 취소, 탈퇴는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행위
- 취소 또는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숨겨두거나 회원가입, 구매 또는 계약체결 절차와 달리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설계하는 행위
- 회원탈퇴, 구매취소 또는 계약해지 절차 중에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탈퇴 등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에게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행위

행동지침

-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는다.

7) 반복간섭

내용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 21조의2 제1항 제5호).
-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멤버십 업그레이드 거부 등 소비자가 특정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팝업창 등을 통하여 2회 이상 재선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확인시키는 등 정보 제공 목적이 있더라도, 기존 선택·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요구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행동지침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제시할 경우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4.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법 위반 행위시 행위중지, 의무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32조)
영업정지	•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 32조 제4항)
임시중지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32조의2)
과징금	•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관련 매출액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법 제34조)
과태료	•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 부당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 방해 등 행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거래기록 미보존, 사업자 정보 미표시,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다크패턴 금지 위반 등 행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
형사처벌	•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 통신판매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 • 거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거래조건 관련 거짓 정보 제공 시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3조) •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44조)

5.
Q&A

Q. 소비자가 포장을 뜯었는데도 청약철회에 응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예외사유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정기결제 진행 도중에 1회성 할인 또는 무료 제공 후 다시 기존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숨은 갱신에 해당해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비자는 기존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기존 가격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숨은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할인 또는 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최초 계약 시 소비자에게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하면 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최초 계약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별개입니다. 최초 계약 시 동의 및 고지를 함께 이행하는 것은 별도의 동의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해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계약 이후 별도 동의 및 고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소비자가 직전에 선택한 배송지를 미리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도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다크패턴에 해당하나요?

A.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배송지의 경우 청약을 유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의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Q. 온라인물 배너광고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계층구조’ 다크패턴에 해당하나요?

A. 잘못된 계층구조의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취소, 탈퇴, 해지 등에 대한 선택항목을 제시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계층구조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6.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Check-Point	O/X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 기록을 열람·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가?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상품명, 상품정보, 가격, 청약철회, 교환, 환불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누락한 적이 있는가?	
사업자의 금지사항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작, 은폐, 누락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적이 있는가?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및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되어 있는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적이 있는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는가?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를 묻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은 상태로 제시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에게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였는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였는가?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 ‘O’표시가 나오는 경우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공정경쟁 사전심의’/‘kt legals’ 등을 통해 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 행 인 케이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발 행 일 2025. 4.

초판발행 2025년 4월

1차 개정 2025년 10월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케이티 구성원들을 위해 업무 가이드로 발간된 것입니다.

본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